

##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97. 6. 24 화순군수
- 나. 회부일자 : 97. 6. 27
- 다. 상정일자 : 97. 7. 23 (제5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### 2. 제안 설명요지

- 가. 제안자 : 문화공보실장 최영옥
- 나. 개정사유
  -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에 따라 기부행위(주민성금 기관단체 기탁금) 부분을 삭제하여 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함.
- 다. 주요내용
  - 체육진흥기금 조성 정의 변경(제2조 제2항 및 제3항)
    - 주민성금 → 삭제
  - 기금의 조성(제4조 제2항)
    - 주민 및 기관단체등이 기탁한 성금 → 삭제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민병항)

- 동 조례 개정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### 4. 질의 답변 요지

"생략"

### 5. 토론요지

"생략"

6. 심사결과

"원안가결"

첨부 :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

##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|  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|
| 의 안<br>번 호 | 97 - 96 |
|------------|---------|

제출일자 : 1997. 6. 24

제출자 : 화순군수

### 1. 제안이유

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에 따라 기부행위(주민성금, 기관단체기탁금) 부분을  
삭제하여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- 체육진흥기금조성 정의 변경 (제2조 제2항 및 제3항)
  - . 주민성금 → 삭제
- 기금의 조성 (제4조 제2항)
  - . 주민 및 기관단체등이 기탁한 성금 → 삭제

##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 및 제3항중 "주민성금"을 삭제하고, 제4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